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-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 백년대계50 자산배분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
- **정정 사유** : ①운용기간 3년 경과에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
 (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 :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(4등급) → 수익률 변동성 기준(3등급))
 - ②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
 - ③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 - ④제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- **효력발생일** : 2020. 7. 9.

□ **정정 내용**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표지			
-	운용기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	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4 등급(보통 위험)	<u>수익률변동성</u> <u>3 등급(다소 높은 위험)</u>
요약정보			
투자위험등급	운용기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	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4 등급(보통 위험)	<u>수익률변동성</u> <u>3 등급(다소 높은 위험)</u>
투자비용	제 3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기준일 기재	-	<u>2020.6. 27 기준</u> <u>2020.5. 31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 3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6. 27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9. 10. 31 기준	<u>2020. 6. 30 기준</u>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오기 정정 및 미기재	클 -	<u>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증</u>



래스 추가 기재			동 펀드 해당 클래스 내용 만 기재/I, W 클래스 추가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9. 10. 31 기준	<u>2020. 6. 30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9. 10. 31 기준	<u>2020. 6. 30 기준</u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	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 추가	-	<u>누락 기재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가. 투자 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 (2)트러스톤 백년대계 증 권모투자신탁[주식-재간 접형]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2)지분증권(주식 등) :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에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(주권상장법인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 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)	2)지분증권(주식 등) :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에탁증권 중 지분증권 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 (주권상장법인 또는 전자 등록기관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 하여 발행한 공모주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 합한 투자자 유형	운용기간 3년 경과에 따 른 투자위험등급 산정기 준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 위험등급 변경 내역	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투자위험등급 : 4 등급(보 통 위험)	수익률변동성 표준편차 :10.54 % 투자위험등급 : 3 등급(다 소 높은 위험) <u>2020.7.9. : 4 등급 → 3 등급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 한 사항	제 3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6.27 기준</u>
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 만원 한도	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, <u>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</u>

4)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
대한 과세

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
납입액 포함)

액 이내
가. 연 1,800 만원(퇴직연
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
포함)
나. 조세특례제한법 제 91
조의 18 에 따른 개인종합
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
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
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
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
금액(이하 “전환금액”) 중
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
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

공제제도

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
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
는 금액을 세액공제
- 종합소득금액 4,000 만
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
5,500 만원 이하(근로소
득만 있는 경우) 일 경우
15%에 해당하는 금액을
세액공제

-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
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
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
천만원 초과)하는 경우 연
간 저축금액 중 300 만원
한도로 12%에 해당하는
금액을 세액공제
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
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
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
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
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
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

공제제도

[별첨] 연금저축계좌 과세
주요 사항 중 공제제도 참
조

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
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
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
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
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
에 제외됩니다.
※ 지방소득세 별도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제 3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6.27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3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6.27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	제 3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6.27 기준</u>
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19. 10. 31 기준</u>	<u>2020. 6. 30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나. 주요 업무 (3) 업무위탁 ② 수익자명부 작성업무 의 위탁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<u>한국예탁결제원</u>	<u>전자등록기관</u>
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	주소 업데이트	-	<u>업데이트</u>
5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	주소 업데이트	-	<u>업데이트</u>
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 등 (3)수익자총회 결의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 항 반영	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 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 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 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	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 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 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 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
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



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.

-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/ 신탁업자의 변경 /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(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 /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/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/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령 제 80 조 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) / 집합투자업자 변경 /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/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/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<신 설>

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.

-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/ 신탁업자의 변경 /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(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 /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/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/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령 제 80 조 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) / 집합투자업자 변경 /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/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/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- 다만,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

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하여야 함

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

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

3.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에 동의하거나, 신탁업자가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

- 위의 사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제 5 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함

1. 대상금액 :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수익자총회 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과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대비용(자문료, 시스템개발비 등)을 포함

2. 대상기간 : 변경 시행일로부터 1 년간. 단,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

			<u>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함</u> <u>-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 자는 위의 보상 등 과는 별 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(법제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 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 로 한다)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 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2) 자산운용보고서 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 서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<u>한국예탁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</u>	<u>전자등록기관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 로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 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1)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<u>한국예탁원</u>	<u>전자등록기관</u>

[별첨]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중 공제제도

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대상	50세 이상 세액공제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대상	세액공제율
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400만원 (700만원)		600만원 (900만원)		15%
1억원 이하 (1.2억원 이하)				300만원 (700만원)	12%

※ 지방소득세 별도

※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기한 및 적용제외 대상

- 적용시기 : 2020.1.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- 적용기한 : 2022. 12. 31.



- 적용제외 대상 :

-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.2억원 초과자
-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(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)